

※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지시[의약품심사조정과-1936호, 2017. 03. 24]에 따라, 제품명이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	현행 허가사항	변경 허가사항
제품명	타플로탄-에스점안액0.0015% (타플루프로스트)	타플로탄-에스점안액0.0015% (타플루프로스트)(1회용)